

구미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장 김영규 의원입니다.

구미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 12. 24일자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서 조례안의 내용도 상위법령과 관련되는 조항을 인용 부분정정하는 사항으로 중요내용으로는 주민세 균등할 세액을 동에 주소를 둔자에 대하여 1,500원에서 1,800원으로 하고 납기는 당초 7월 16일부터 7월 31일이든 것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법령에서 건설기계를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조례에서도 관련조항을 삭제시키고 법 개정에 따라 주요용어를 변경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단순한 용어변경, 관련조항인용, 부분정정 사항으로 상정한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먼저 일반 회계에서 토지 취득이 총 5필에 9.447평으로, 그 내역은 광평동 노인정 부지, 신평2동사무소 부지, 옥계동 택지개발지내 동사무소 부지, 선산출장소 확장 부지이며, 노인복지향상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 시설 용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입니다.

옥계동 택지개발지내 동사무소 부지는 94년에 관리계획승인 되었으나, 예산미 편성으로 매입치 못하고 현재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원가 매입이 가능하며 선산출장소 확장부지는 94년도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예산편성 조치까지 되었으나, 지주들의 반대로 매입치 못하여 예산은 95년도로 명시이월 시키고 현재는 지주들의 매매 승낙을 받아 두어 95년도 관리계획에 반영 승인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교환재산으로서는 분동에 의한 지산동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국유지인 지산동853-12번지 1.285평과 사유재산으로 무상 임대 해주고 있는 형곡, 원동, 송정파출소 부지 3필지 528평을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지산동사무소 부지 확보가 시급한 이때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기업 재산으로서는 취득재산이 6필에 3.418평으로 옥계동 572번지 2.951평은 수도시설로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무상 양여 받는것이고, 도량동 115번지 80평도 수도용지로서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무상 양여 되는 토지 입니다.

그 외 4필지 387평은 민원 해결을 위한 상수도 가압장 부지와 3공단의 공업용수 관로 부지로서 사후 승인 사항입니다.

매각대상으로는 도량동 산 32-19.20 2필 56평으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24조에 의한 두산 주택 택지건설사업 계획지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적당한 위치에 공공시설 용지 확보가 극히 어려운 이때 신속히 대처할수 있도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